접 수	의안과 - (20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제3장 제1절 개정에 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년 월 일

청 원 인

성 명 : 이나용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이나용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성명 : 이나용
건 명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제3장 제1절 개정에 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2월 13일

소개의견

청원인 이나용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학생자치위원회 소속 청소년 의원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자 나라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현재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를 비롯한 동아리와 학생자치기구 등이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자치권이 권장·보호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의 학칙들은 학생자치권과 배치되는 규정들을 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청소년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자치권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 제3장 제1절을 개정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청소년 의회 학생자치위원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되, 학교장은 그 범위 안에서 학칙을 정하고 교육청에 보고한 뒤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조직 가능한 학생자치기구의 기준 및 조건 등이 있다.

□ 학교장은 학생들과의 유기적인 상호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학칙을 제정하며, 학생자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

□ 학생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학교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되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 내에 학생자치해결위원회를 마련한다.

□ 학생 징계의 내용 중 퇴학과 정학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각 학교 내에 연간 2회 공청회를 의무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생자치의 발전을 도모한다.

□ 연중 2회 모든 학교 내의 학생자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올바른 자치활동에 대한 개념과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를 촉구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 교육법 제3장 제1절 개정에 대한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소 개 의 원 이나용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학생자치권을 보장받고 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현 시행되고 있는 교육법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자치를 학교장 재량에 위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규정된 학칙들은 학생자치권과 배치되는 규정이 많습니다. 이는 권장 및 보호되어야 할 학생자치권을 간과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소년 의원은 대한민국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권장하며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 제3장 제1절을 전면 개정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2. 주요골자

□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되, 학교장은 그 범위 안에서 학칙을 정하고 교육청에 보고한 뒤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조직 가능한 학생자치기구의 기준 및 조건 등이 있다.

□ 학교장은 학생들과의 유기적인 상호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학칙을 제정하며, 학생자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

□ 학생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학교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되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 내에 학생자치해결위원회를 마련한다.

□ 학생 징계의 내용 중 퇴학과 정학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각 학교 내에 연간 2회 공청회를 의무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생자치의 발전을 도모한다.

□ 연중 2회 모든 학교 내의 학생자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올바른 자치활동에 대한 개념과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를 촉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초·중등 교육법」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개정 2012.3.21)에 대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개정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한다. ① 각 학교의 학생회를 비롯한 동아리와 각종 학생자치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자발적으로 조직 및 활동할 수 있다.

	② 각 학교의 학생자치기구는 다음의 조건이 성립할 때에 조직될 수 있다. 1. 선정적·폭력적이지 않음 2. 학습을 위협·방해하지 않음 3. 학생자치가 인정되는 경우 가. 학급회를 비롯한 학생회 조직 나. 자율동아리 다. 학생자치법정 위원회 라. 기타 자율·창의성이 인정되는 기구 ③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학칙을 학교장이 제정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관할 교육청에 보고되어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거부될 수 있고 이상적인 학칙으로는 학생자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른다. 1. 교육청 보고 사항 가. 학칙 내용 나. 학칙 목적 다. 학생 의견 수렴 정도 2. 학칙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가. 학생자치권 침해 나. 학생 의견 미반영 3. 학생자치위원회의 방향 권고 가. 자율성 존중 나. 학생자치권 보장 다. 학교장 개입 최소화 라. 학교 내 학생자치해결위원회 마련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과정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해당 징계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제18조의5(학생 및 학부모 의견의 적극수렴) 각 학교들은 연간 2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자치만족도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신설>	제18조의6(학생 자치교육) 각 학교장은 연간 2회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치활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학생자치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의식 개선과 의지 촉구를 내용으로 한 학생 자치교육을 실시한다.

청원인 성명 : 이나용
청원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①「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②「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예] 성명 : ○○주식회사**
> ……
>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외 24인(법인)**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